종합감사

- 2026년 안성시 종합감사 -

감 사 결 과 보 고 서

2026. 7.

경기도 감사위원회

(감 사 2 과)

목 차

Ⅰ. 감사실시 개요 ····· 1

Ⅱ. 감사대상기관 현황 ····· 2

Ⅲ. 감사결과 ····· 3

1 감사결과 총괄 ····· 3

2 종합의견 ····· 3

3 주요 지적사항 ····· 4

Ⅳ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····· 9

1 본처분 ····· 9

2 현지처분 ····· 9

Ⅴ. 감사만족도 조사 ····· 10

Ⅰ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안성시를 「2026년 감사 기본계획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 시행 ※ 안성시 지난 감사 : 2022. 12. 8. ~ 12. 15.

○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과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함으로써, 도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

2.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
○ 감사대상: 안성시 (소속기관 포함)

○ 감사범위: 2022. 10. 1. 이후 업무 전반 (위임사무 자료요구 2023. 1. 1. 이후)

○ 중점사항

-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·관행 최우선 해결
- 민생안정을 위한 안전, 인·허가,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
- 예산, 계약, 보조금 등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

3. 감사실시 과정

○ 사전준비: 자료수집(2026. 2. 27. ~ 3. 17.), 착안회의 실시(2026. 3. 11.)

○ 감사기간: 2026. 4. 1. ~ 4. 9.(7일간) ※ 사전조사: 3. 18. ~ 3. 26.(7일간)

○ 감 사 반: 감사단장 등 4개팀 23명

4. 감사결과 처리

○ 마 감 회 의: 2026. 4. 9. ※ 안성시 부시장 등 참석

○ 감사위원회(심의·의결): 2026. 6. 8. / 6. 22.

Ⅱ 감사대상기관 현황

1. 일반현황

○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관문이자, '안성맞춤' 으로 대표되는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첨단 반도체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서,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

○ 인구, 면적 등 일반현황

(2025. 12. 31. 기준)

인 구	면 적	행정구역 수
212,040명	553.5㎢	1읍 / 11면 / 3동 / 72통 / 434리 / 1,688반

2. 조직 및 인력

○ 조 직 : 집행기관(3담당관 4국 2직속기관 1사업소 15읍면동) 의회사무기구(1의회사무과)

○ 인 력 : 1,373명-공무원 정원 1,167명 / 공무직 정수 206명

- (공무원 정원) 본청 646 의회 20 직속기관 198 사업소 18 읍면동 285

3. 재정규모

○ 예산규모 (2025년 본예산 기준)

(단위: 억 원)

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
12,774	10,886	1,887	28.53%	58.11%

4. 주요사업 현황

○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(2021~2030년, 6,747억 원/ 한국산업단지공단)

○ 공도 시민청 건립(2020~2026년, 452억 원)

○ 호수관광·레저산업 육성(2022~2028년, 943억 원)

○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(2021~2028년, 467억 원)

○ 도시 바람길숲 조성(2022~2026년, 200억 원)

○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(2022~계속, 현재까지 지원 예산 144억 원)

Ⅲ 감사결과

1. 감사결과 총괄

○ 2026년 안성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현황

행 정 상 (건)						신 분 상 (명)				재 정 상 (백만 원)			
구분	계	기관경고	시정	주의	기타	계	경징계	훈계	주의	계	추징	회수	환급
본처분	76	1	25	50	38	67	3	50	14	497	487	10	-
현지처분	3	-	-	2	1	-	-	-	-	38	-	38	-

※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(주의·통보 동시처분 등)

2. 종합의견

○ 이번 안성시 종합감사는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자치사무를 포함한 시정 전반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,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점검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함

○ 감사 결과, 직전 감사에 비해 지적건수는 증가하였으며,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등 부당 처리,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관리 부적정,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부적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검토 소홀, 관리자 확인·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법·부당 사례가 여전히 확인됨

※ 총 건수(46→79건) / 기관경고(2→1건) / 경징계(5→3명) / 훈계 이하(33→64명)

○ 이는 직전 감사 이후 신규 인력이 증가(1,142→1,373명)한 상황에서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부족, 부서 차원의 사전 검토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

○ 이에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

○ 아울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

3. 주요 지적사항

1 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관리 부적정

○ **가과는** 2024년부터 **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를 시행하면서** 계약상대자가 아닌 특정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는 등 **도급업체가 아닌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**하였고 **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**하고 **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**

○ 또한 **작업지시서, 공사감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** 공사감독관의 서면 지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**기성(준공)대금 정산 시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가 지급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이 지급**되게 하였음

조치사항

- 연간단가 공사의 하도급 관리 및 공사감독관의 공사 시행 단계의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고, 불법 하도급 혐의가 있는 계약상대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정지, 벌금 부과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검토하여 조치 **(주의・통보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**

2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 소홀

○ **나과는** 아파트 **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에서 지적된** 하자보수 조치계획(○개 단지)을 제출받지 않았고, 동・호수별 하자 처리결과(○건)도 법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**하자 이행 여부 확인 없이 사용검사 승인**

○ 또한,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감리자 바닥구조 시공확인서(○개 단지) 누락 및 유효기간 경과 바닥충격음 사전인증서(○개 단지)를 적정성 검토 없이 인정하는 등 **주택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처리**하였음

조치사항

-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 처리 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관리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・관리 업무,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증 및 시공확인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**(주의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주의 ○명)**

3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

○ **다과는** 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 위반 혐의자(대상토지 : ㄴ면 ㄷ리 ○-○ 외 ○필지)를 통보받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, 세무서 및 명의수탁자의 비협조를 이유로 **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입증 조**

치(진술요구, 조세이익 유무 확인 등)를 취하지 않은 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

조치사항

-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**(주의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훈계 ○명)**

4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부적정

○ **라과 등 ○개 부서**는 통합관리팀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 환수대상자 명단(○명, 76,939천 원)을 통보받았는데도 **환수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**하였고, 특히 나과는 '24년 **○회에 걸쳐 문서로 통보 받은 ○명 중 ○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**

○ **라과 등 ○개 부서**는 대상자 ○명*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고, 미납하는 경우 독촉, 체납처분 등 **환수 업무를 소홀**히 하여 **69,792천 원의 미납액 발생**

○ 또한, **라과**는 **○건**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받았는데도 환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납부 관리를 **소홀**히 하여 **○건 318천 원의 미납액 발생**

조치사항

- 사회보장급여 환수가 필요한 ○건은 보장비용 징수결정 또는 반환결정 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환수절차를 이행하고,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○건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은 ○건은 개별 건에 따라 납부통지, 납부독촉,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**(시정)**
-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회보장급여 환수 대상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 강구 **(통보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, 주의 ○명)**

5 농지전용허가(협의) 업무 부적정

○ **마과는** 공장 신설·증설, 건축신고 신청 등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요청 ○건(○필지, ○㎡)에 대하여 해당 농지에 부과된 **처분의무**(기한 1년) **또는 처분명령 유예기간**(3년)이 **만료되지 않은 상태**에서 **공장, 소매점** 등 **다른 용도**로 **전용**이 **가능**하도록 **허가(협의) 처리**함

○ **마과**는 **보전관리지역 내**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**1,000㎡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(협의)를 할 수 없는데도**, "ㄹ면 ㅁ리 ○-○번지" 일원 **제1종 근생(소매점) 건축 목적으로 농지전용 협의 신청**(1,227㎡)에 대하여 **전용이 가능**하도록 **허가(협의) 처리**함

조치 사항

- 「농지법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전용허가(협의)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**(주의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**

6 의료법인 정관 변경 등 허가 및 지도·감독 소홀

○ **바과**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나 정관 변경 허가 시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○개 법인이 **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채 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제출**하였는데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**허가 처리**함

○ 또한,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의 **법정민원 ○건을 최대 65일 지연접수하여** 「의료법」에 따른 **처리기간을 경과**하였으며, 임원선임보고를 받으면서 임원 임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**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지도·감독하지 않았고**, 의료법인 제출 문서 **○건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보관**함

조치 사항

- 「의료법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의료법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기본재산 처분 ○건 및 정관 변경 ○건과 법인 임원 임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하시고,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미등록 문서에 대하여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**(주의·통보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훈계 ○명)**

7 취득세 부과·징수 업무 소홀

○ **사과는 등기·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 납부가 누락**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**취득세 56,658,840원(가산세 포함)을 부과·징수하지 않음**

○ 그리고 초등학교 신축비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신규 취득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**주식회사 ㅂ건설이 20○○. ○. ○. 초등학교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채 아파트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**를 하였고, **사과는 초등학교 신축 비용에 대한 그 취득세 34,708,750원(가산세 포함)을 부과·징수하지 않음**

조치 사항

- 취득세 부과·징수업무를 철저히 하고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91,367,590원을 부과·징수 조치 **(주의)**

8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소홀

○ **아과는**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매년 제3종 시설물에 대한 **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후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**하고 이를 통보받은 **소관부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자과 등 ○개 소관부서에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,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함**

조치사항

- 실태조사 누락 및 미실시 대상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**(시정)**

9 산지전용허가(협의) 및 복구비 예치 업무 소홀

○ **차과는** 산지관리법에 따라 **자기 소유의 산지**에만 **단독주택**을 축조할 수 있는데도 **타인 소유의 산지**에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 신청된 사항에 협의하여 **산지전용할 수 없는 자**가 **부당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음**

○ 또한,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시 산지전용 면적이 **1만 제곱미터 이상**으로 **산지복구 공사감리 대상**에 해당하는 경우 **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이** 추가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나, **요율이 반영되지 않아 총 ○건의 복구비가 과소 예치됨**

조치사항

-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산지전용허가(협의) 및 복구비 예치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,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된 복구비가 예치될 수 있도록 부과 및 관리 방안을 마련 **(주의)**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**(훈계 ○명)**

10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등 부당 처리

○ **타과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임명·위촉하지 않고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을 요청한 부서에** 서류전형 평가를 요청하는 **공문을 발송하고, 이에 따라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채 채용 요청부서 해당팀의 담당자와 팀장이 사실상 시험위원의 역할**을 하도록 하고 **아무런 기준 없이 응시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**하도록 하는 등 **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서류전형 평가와 면접시험 평가 절차를 진행**함

○ 그리고 **타과는 총 근무기간 5년이 초과되어** 다시 해당 직위에 응시한 직원에 대한 1차 시험(서류전형)을 진행할 때 관련 규정과 다르게 **사전에 회피 절차가 포함된 시험위원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도 않은 채 응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팀장과 직원 등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평가를 수행**하도록 함

조치 사항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**(기관경고)**
-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, 회피 절차가 포함된 시험위원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**(주의)**

Ⅳ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1. 본처분

○ 행정상 조치: 76건 (기관경고 1, 시정 25, 주의 50, 기타 38)

※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(주의·통보 동시처분 등)

○ 신분상 조치: 67명 (경징계 3, 훈계 50, 주의 14)

○ 재정상 조치: 486,750천 원 (추징), 9,859천 원 (회수)

"표 생략"

2. 현지처분

○ 행정상 조치: 3건 (주의 2, 통보 1)

○ 재정상 조치: 38,101천 원 (회수)

"표 생략"

V 감사만족도 조사

1. 조사 개요

○ 기 간: 2026. 3. 18. ~ 3. 26. (7일간)

○ 대 상: 감사장 방문 수감공무원 전체

○ 내 용: 감사관의 자세, 전문성, 불필요한 자료요구 여부 등 설문서 작성

2.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

○ (총 평) 감사관의 **친절도, 의견청취 노력도, 전문성**에 높은 만족도를 보임

☞ **대체로 긍정적** ('보통' 이상으로 응답한 사례가 **98.4%**)

○ (설문조사 결과) 총 64명 참여

연번	설문내용	만족도
1	감사관 친절도	긍정(92%), 보통(8%), 부정(0%)
2	의견청취 노력도	긍정(91%), 보통(9%), 부정(0%)
3	감사관 전문성	긍정(91%), 보통(6%), 부정(3%)
4	업무추진 도움여부	긍정(88%), 보통(9%), 부정(3%)
5	불필요한 자료요구	긍정(94%), 보통(6%), 부정(0%)
6	지적사항 수용여부	긍정(84%), 보통(13%), 부정(3%)

3. 조치사항

○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공유하여 향후 현지감사 대응 개선자료로 활용